

원고, 박○○ 외 2인

피고, 대한민국

소 장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 주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1. 박○○

2. 김○○

3. 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4-2 일신빌딩 3층

담당변호사 박주민

(Tel: (02) 2038-3620, Fax: (02) 2038-3621)

피 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

-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각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2011. 6. 9.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나, 해군으로부터 위 게시물을 삭제당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해군의 업무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해군의 위법행위

(1)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

원고들은 2011. 6. 9. 각 12:57:56, 14:20:15, 15:25:44에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이하 “제주

해군기지"라고만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반대 의견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1내지3).

그러나 해군은 위와 같은 원고의 글을 모두 삭제하고, 2011. 6. 9. 19:31:17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해군 공식 입장입니다'이라는 공식입장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6월 9일(목)과 같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백 여건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 글들은 국가적 차원이나 제주 강정마을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주기지 건설에 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 글들은 삭제 조치"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갑제2호증). 이러한 해군의 공식 입장은, 해군측에서 원고들의 글을 포함하여 다른 국민들이 작성한 백 여건의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였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의 게시글 삭제와 공식입장 표명에 대한 반박으로 원고 박○○가 2011. 6. 9. 21:06:01에 작성한 '공식입장에 대한 반박글'과 원고 임○○이 2011. 6. 9. 20:43:20에 작성한 '아주 꼴잡을 떨고 있네요...'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삭제조치로 일관하였습니다(갑제3호증의1 및 2).

원고들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제주 강정마을에서 일어나는 폭력사태를 걱정하고,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견해를 알리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글의 내용 속에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해군을 근거 없이 비난하려는 목적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원고들의 게시물이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제2호 나목(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다목(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삭제하였습니다.

(2)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우리 헌법 제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과 관련된 자신의 의사를 언론이나 출판 등에 의하여 외부로 표현하고 전달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을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사표현의 수단의 형태는 제한이 없으므로¹⁾, 원고들은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작성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은 국민이 해군의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더욱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군참모총장 역시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군 홈페이지는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해군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해군은 위와 같은 의사표현의 자유의 명시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임시조치도 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삭제를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원고들의 글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3) 행복추구권 침해

1) 헌법재판소 1993.5.13. 91헌바17 결정

우린 헌법 제 10조 1문 후단은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폭넓게 인정됩니다.²⁾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바람의 일환으로, 해군의 제주 해군기지건설 정책에 대한 반대와 제고를 바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게시글을 삭제함으로써, 원고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4) 소결

해군은 고의적으로 원고들의 게시글을 삭제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군은 규정에 어긋나지도 않는 게시글을 해군의 정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만으로 예고 없이 삭제하였고,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불법이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해군의 위법한 행위는, 현재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고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가 크고, 자

2) 헌법재판소 2003.10.30. 자 2002헌마518 결정

기검열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할 때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대다수의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통해,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가 작용될 수 있도록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는 선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기본권 침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심적인 손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그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각 700만원의 위자료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강제1호증의1 내지 3 각 게시글
1. 강제2호증 해군의 삭제공지
1. 강제3호증의1 및 2 반박게시글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 3통 |
| 2.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통지서 | 각 1통 |
| 3. 송달료납부서 | 1통 |
| 4. 소송위임장 | 1통 |
| 5. 소장부분 | 1통 |

2013. 8.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 주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